

2011 승진 형법기출문제 경위 [윤황채교수]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형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구) 아동복지법(2000.1.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 ④ 특정정제범죄 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 ③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 ④ 무단반출한 물품 중 칼라인화지에 대한 세율이 범행 당시는 100퍼센트였으나 그 후 관세법의 개정으로 40퍼센트로 변경된 경우, 세율의 변경도 형의 변경이고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이므로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①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의 징표기능을 부정하게 되어 범죄론체계의 일관성이 없고,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②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작위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 때 교사·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③ (구)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범무사가 아닌 사람이 범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범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범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범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 한다.

4.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①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책임요소설은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초래하고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불합리가 있다.
- ②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므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④ 강도가 배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5.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 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 ③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다음은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화갑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뼈투)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침해는 작위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으나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㉔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㉕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㉔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㉕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 ㉖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㉗ 피고인이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먹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하였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한다.
- ②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 자체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 ④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9.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여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
- ③ 마약취급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 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

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하더라도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④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제한고의설에 대해서는 상습범 또는 확신범 등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특별히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형사정책적인 결함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10.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들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인 공용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 ②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 ③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12.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㉔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해당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② 타인이 경영하는 축산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하였을 뿐 목장의 경영문제에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 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③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
- ④ 중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14.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③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 ④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15. 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만 묶인 것은?

- 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불능미수 ② 중범 - 심신미약자

- ③ 자수·자복 - 중지미수 ④ 농아자 - 과잉방위

16.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될 때 그 순서로서 옳은 것은?

-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누범가중→경합범 가중→제34조제2항(특수교사방조)의 가중→법률상 감경→작량감경
- ②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경합범 가중→제34조제2항(특수교사방조)의 가중→누범가중→작량감경→법률상 감경
- ③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제34조제2항(특수교사방조)의 가중→누범가중→법률상 감경→경합범 가중→작량감경
- ④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법률상 감경→작량감경→제34조제2항(특수교사방조)의 가중→누범가중→경합범 가중

17. 甲은 처 乙과 자녀문제,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乙이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甲에게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자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었고, 그 직후 乙은 몸에 그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혀 자살하였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 ① 무죄 ② 자살방조죄
③ 승낙살인죄 ④ 촉탁살인죄

18.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경찰로부터 뺨까지 맞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앞으로 수박이 없어진다면 내 책임으로 한다.”는 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9.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 ②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꿈쩍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 ③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 ④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를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0.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경찰청 민원실에서 딸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경우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④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21.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 ②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2.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③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④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23.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위 축제가 끝난 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② 정상적으로 KOC 위원의 위촉절차를 밟지 않고 KOC 위원이 되고자 KOC 위원장에게 KOC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등의 부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③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④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24.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A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소재 연안아파트 상가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다른 곳에 버린 다음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버린 경우 위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④ 甲회사가 乙에게 철재를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甲회사의 사원인 피고인이 위 乙로부터 피해자丙이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운반하여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25.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모의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 ③ 준강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④ 준강도는 목적범이다.

26. 다음 중 사기죄(미수 포함)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무효인 가등기여서 그 말소를 구할 권리를 가진 부동산소유자가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경우
 ㉡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甲은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을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을 취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④ 배임죄

28.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더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었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를 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9.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의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체의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태인 일명 '프랜차이즈 계약(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그 가맹점주가 보관중인 물품판매대금을 본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

한다 할 것이다.

30.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묶은 것은?(판례에 의함)

- ㉠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후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① ㉠ ② ㉡ ③ ㉠㉡ ④ ㉡㉢

31.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②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유형에 포함된다.
 ③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④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32.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를 불실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②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33.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명의인을 기망하여 사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④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3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해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이 일반 관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②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관,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예배 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④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② 행정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

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③ 세무서 주세계장이 양조장 주인의 비밀스런 주정사용과 탈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④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본사인 수원중부경찰서 외사계에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37.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결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부동산강제집행효유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38. 범인도피(은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한다.

③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④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9.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해 분리되고, 공소외인만이 피고로 남은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이라면 위증죄에 해당한다.

- ㉠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 ㉡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심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 피고인 자신이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했다면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고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경우 乙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②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어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甲, 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甲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2011년 경찰관 정기 승진시험 모범답안(윤황채교수)

계 급	경 위	과 목	윤!형법
1	2	3	4
④	④	①	②
6	7	8	9
③	①	②	④
11	12	13	14
③	②	④	①
16	17	18	19
③	②	④	④
21	22	23	24
②	①	①	①
26	27	28	29
④	③	①	①
31	32	33	34
②	④	③	②
36	37	38	39
④	③	②	④

윤 황 채

- 약 력
- 현 서울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JBS 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고려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인천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경남대학교 형법특강강사
 - 현 대구 산업정보대 형법특강강사
 - 현 전국 경찰형법모의고사 대표출제위원
 - 전 대구 국민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전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형법강의
 - 전 서울 노량진 김재규 경찰학원 강의
 - 전 서울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강의
 - 전 대구 한교고시 학원 법원검찰 강의
 - 전 서울 종로 한교고시학원 강의
 - 전 부산 금자탐경찰고시학원 강의
 - 전 영남이공대 경찰경호학과 강의
 - 전 마산 중앙고시학원 형법강의
 - 전 울산 남부고시학원 형법강의

윤황채 2011년 2차시험대비 형법판례특강 형법판례때려잡기특강

2011년 5월 예정

1. 2010년 1차, 2차시험에서 판례의 98%와 100% 적중률!
2. 직접 교재로 확인가능 합니다!!!
3. 판례를 알면 형법이 보이고, 고득점이 보이고 합격이 보인다!
4. 처음 형법을 공부해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쉽게 판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1년 2차시험대비 형법총정리마무리특강 형법조문-형법이론 및 학설-핵심판례

2011년 7월 예정

1. 형법 법조문 완전정복!
2. 형법이론 및 학설 마무리정리!!
3. 출제가능 핵심판례 요약정리!
4. 2010년 최신판례 완벽정리!
5. 형법 쪽집게 암기사항 마무리!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음 2010. 제4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7판]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도서출판 배움 2011. 초판]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8. 개정판]
5. 형법조문과 판례[도서출판 예음 2010. 초판]
6. 객관식 경찰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 배움 2011. 제2판]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11. 제3판]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11. 제3판]

교재문의는 부산 JBS경찰학원(051-817-6112)
(051-817-3112)

서울 노량진 베리타스M고시학원 02-826-5700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부산 JBS경찰학원 051-817-6112

카페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gosicore@naver.com

윤황채 형법고득점 7단계공부전략

1단계 : 교과서 공부 (PASS 핵심형법)

1순환 : 기초 법률용어공부 (형법적응하기)

2순환 : 형법 기본학습 (형법내용보기)

3순환 : 형법 심화학습 (형법깊이보기)

2단계 : 기초형법 문제풀이 (기본문제)

3단계 : 판례공부 (판례때려잡기)

4단계 : 학설-이론-법조문 심화학습 (형법총정리)

5단계 : 형법기출문제풀이

1순환 : 경찰기출문제 (순경, 경찰간부, 경찰승진)

2순환 : 기타기출문제 (검찰직, 법원직, 법원고시, 사법시험)

6단계 : 형법기출지문정리 (기출지문OX정리)

7단계 : All Pass 형법문제풀이

1순환 : 진도별 문제풀이 (6회)

2순환 : 심화문제풀이 (총론1회, 각론1회)

3순환 : 종합문제풀이 (1회)